

第301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8號

國會事務處

2011年6月30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
55.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附議된案件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권경석·고승덕·이상권·이한성·원혜영·이명수·김소남·정갑윤·구상찬·김광림 의원 발의) 4
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4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김성수·박상은·이춘식·나성린·유일호·김광림·김성식·정양석·이사철·허태열·유승민·원유철·조해진·유정현·권영진·강성천·차명진·김영선·주호영 의원 발의) 4
5.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4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4
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9.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4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4
11.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김성곤·황우여·정태근·최구식·여상규·김용태·김정권·조정식·박민식·김선동·이종구·이화수 의원 발의) 6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이정선·김정·배은희·김호연·이진복·유재중·이화수·김태원·김태환 의원 발의) 6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6
1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7

1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7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7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7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7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 · 강석호 · 김성수 · 배영식 · 이한성 · 박종근 · 한선교 · 박순자 · 임동규 · 유승민 · 이해봉 · 이성현 · 조승수 · 김성희 · 이진복 · 안홍준 · 조원진 의원 발의) 7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 · 정병국 · 이명수 · 안경률 · 이성현 · 김성태 · 김옥이 · 이두아 · 이인기 · 정의화 · 박순자 의원 발의) 7
2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이명규 · 이종혁 · 박준선 · 최연희 · 김을동 · 이학재 · 박순자 · 배은희 · 이군현 의원 발의) 7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7
2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7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7
2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0
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0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0
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0
2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0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0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0
3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이명수 · 김을동 · 안규백 · 이사철 · 여상규 · 박준선 · 원유철 · 박주선 · 김학송 의원 발의) 16
3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 · 황영철 · 김을동 · 노철래 · 김우남 · 심대평 · 김장수 · 정영희 · 정수성 · 정하균 의원 발의) 16
3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장 제출) 16
35.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
3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
3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38. 야생동 · 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3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 · 이윤성 · 허범도 · 김성희 · 차명진 · 권영세 · 이화수 · 박준선 · 조원진 · 강성천 · 이경재 의원 발의) 18
4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장 제출) 18
4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4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4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4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4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5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21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22
54.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2
55.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23
o 의사진행의 건	24
o 5분자유발언	25

(14시22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권경석·고승덕·이상권·이한성·원혜영·이명수·김소남·정갑윤·구상찬·김광림 의원 발의)
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김성수·박상은·이춘식·나성린·유일호·김광림·김성식·정양석·이사철·허태열·유승민·원유철·조해진·유정현·권영진·강성천·차명진·김영선·주호영 의원 발의)
5.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4시24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1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존경하는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위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土海洋委員長代理 張倫碩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시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분의 250 미만으로 하여 건설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와 영구 임대주택 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납세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률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진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골재채취업의 등록 기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법인의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에 관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중인 산업단지개발사업에도 이 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요구하는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협약의 강행규정 중 현행 선원법과 상이한 선원의 근로조건 등을 강화하고 선원 송환을 위한 국가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설 납부금의 납부의무를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온 물류창고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

련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장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1인, 기권 3인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 기권 2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4, 기권 3인으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해외건설촉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6인
 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6인, 반대 3인, 기권 6인
 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반대 4인, 기권 1인
 으로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9인, 기권 4인으로서 선
 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김성곤·
 황우여·정태근·최구식·여상규·김용태·
 김정권·조정식·박민식·김선동·이종구·
 이화수 의원 발의)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
 이정선·김정·배은희·김호연·이진복·
 유재중·이화수·김태원·김태환 의원 발의)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1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1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강석호·김성수·배영식·이한성·박종근·한선교·박순자·임동규·유승민·이해봉·이성현·조승수·김성희·이진복·안홍준·조원진 의원 발의)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정병국·이명수·안정률·이성현·김성태·김옥이·이두아·이인기·정의화·박순자 의원 발의)
2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이명규·이종혁·박준선·최연희·김을동·이학재·박순자·배은희·이군현 의원 발의)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2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14시39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14건에 관해서 존경하는 지식경제위원회의 김재경 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위원장대리 김재경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경 의원입니다.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고대)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뿌리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률안 제명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적 융·복합 산업인 로봇산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률입니다.

다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산업기술을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한정하여 산업기술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성현 의원, 노영민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러닝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훈 의원, 임두성 의원, 김성수 의원, 이명수 의원, 송훈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품질경영체제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구조고도화사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성동 의원, 정병국 의원, 홍재형 의원, 김기현 의원, 우계창 의원, 노영민 의원, 임동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연계하여 개정하는 위원회안입니다.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천연가스 등 도시가스에 대한 적정한 품질기준 및 제3자 품질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석유제품 저장·운송·보관·사용 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기현 의원과 배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기현 의원, 이상권 의원, 김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용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4건 심사보고서·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 존함)

○부의장 정의화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이 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투표 마치겠습니다.

기록하기 위해서…… 강기갑 의원님은 지금 아 마, 따로 회의록으로 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7인 중 찬성 211인, 기권 6인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6인, 기권 4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출)

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출)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출)

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출)

2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출)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출)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출)

(14시5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5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주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대리 주성영** 사법개혁, 아쉬움을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이르는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입니다.

우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담당 공무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법조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②재판연구원(로클릭)제도를 도입하며, ③대법관추천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④판사에 대한 평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

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금지 처분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①출국금지 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②통지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총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③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심의서는 특별사면을 행한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②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 ③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규정을 신설하고, ④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게 수사과정에서의 목록작성을 의무화하여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여 수사 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신청대상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주성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허태열 의원님, 하셨습니다?

예,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의원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저는 수사권 관련 형소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원래 어렵사리 합의안을 마련하여 사개특위에서까지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법사위에서 관련 기관 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충돌되었던 중요한 부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정의결 해 버렸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 1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심사 과정에 참여하였던 저로서는 법사위의 그러한 행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어제 오늘 이것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 며칠 전에는 경찰에서 유사한 사태가 있었다는 점도 언론에 보도된 바입니다.

검찰·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

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동안 사개특위는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지만 수사권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권의 업무분장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부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실로 논의를 이관시켰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약 20일 간의 격론을 거쳐서 어렵고 힘들게 도출된 것이 바로 개정안 원안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계 부처 장관들, 검찰·경찰의 수장까지 4개 기관이 서명한 합의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6월 20일자 바로 열흘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사법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합의안에 대하여 양쪽 모두 불만이 있었지만 안도감을 표시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만들었을 때가 불과 며칠 전인데 그동안 이를 수정할 만한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검·경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쟁 끝에 어렵게 합의에 이른 개정안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사위에서 월권하여 또다시 원안을 수정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갈등을 풀어야 할 국회는 어디 가고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매듭지었던 갈등을 다시 조장하는 국회만 남은 것입니까?

법사위 위원님들, 아니 여야를 떠나 우리 의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수정안이 혹시 특정 사안으로 인한 야당의 꾀함이나 반영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 내용의 호불호를 떠나서, 법무부령이 좋다, 대통령령이 좋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 옳지 못한 선례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가결한 법안에 대해서 뒤늦게 법사위에서 핵심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야 간 합의로 의제를 처리하는 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위질을 할 바에는 뭐 하러 중요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서 총리실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서명을 하고, 그리고 뭐 하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입법권도 제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영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

에 합당합니다.

합의안 문안 하나하나의 자구는 어느 하나를 건드리는 순간 합의의 균형이 무너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합의의 당사자들이 승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약속을 해 놓고 너무나 쉽게 이를 뒤집는 행태를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최근의 KBS 수신료 파동 또 동남권 신공항 문제, 행정 중심복합도시 문제 등도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 시켰던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부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법사위에서 수정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박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의원 우리 국회는 작년 2월 18일 사개 특위 출범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쳐 발전적인 사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었던 검찰개혁 의제들 중에 핵심 사항이었던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결국 무산되었고 유일하게 남은 검찰개혁의 의제가 경찰수사권 문제입니다.

사실 경찰수사권 문제는 검찰의 형사사법 권한 독점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권 독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수사개시권 명문화, 현실의 법제화 수준에서 봉합되어 검찰개혁이라고 부르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현실의 법제화 정비에 불과한 법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국회가 검찰 반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안을 또다시 국회가 번복하는 것은 입법권의 포기이며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부 합의안을 존중하더라도 결국 입법은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이자 신성한 의무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회는 국민들 앞에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196조제3항의 위임 근거는 법무부령보다는 대통령령이 타당합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과 법무부 소속 검찰청이 분담하고 있어 어느 한 부처의 소관사무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을 뿐(헌법 95조) 행정각부 간 권한의 획정,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헌법 8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과 검찰청의 공동 사무인 수사 및 수사지휘에 관한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수사는 성격상,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률로 규정함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만약에 법률로 하지 못할 경우에도 불가피하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정부 조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한 것을 두고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법무부령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반영하되 정부의 합의 정신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법무부령이든 세부적인 사항은 검경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법무부령은 법무부장관이 혼자 바꿀 수 있지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기능을 어느 한 기관에 어떻게 분배할지 그 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입법부 고유의 권능입니다.

이번 정부 내 조정 의뢰는 입법부가 개혁 대상의 압력과 출신 직역 이기주의에 굴복하여 스스로 그 권능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 내 조정 의뢰 당시 그 결과는 단지 참고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은 다행

스러우며, 지금 우리 국회는 정부의 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현실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충분히 조율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그 협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닌 양 당사자가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이 다툼이 아닌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을 써 주기를 바라고 국회에서도 이를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다음은 유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의 이번에 수사에 관한 검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꾼 것에 대해서 대검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며 집단 항의에 나선 이번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검사 지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바꾼 것이 지극히 정당합니다.

법사위에서는 헌법 제89조가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과 행정 각 부분의 권한의 획정 등을 국무회의 심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법률 체계에 맞춰서 대통령령으로 수정한 것이고, 그것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보나 수사에 관해서 정치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동안 법무부령으로 운용

해 왔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은 검찰과 권력의 유착이 극도로 심화된 것만 남았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오히려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 끊임없이 자행되었던 피의사실 공표, 이 정권 내내 집회와 표현의 자유권에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던 공안통치, 야당 국회의원들의 일상적인 의정활동까지도 가혹한 수사로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면책특권마저 형해화시켜 버린 의회민주주의의 후퇴, 그러면서도 스폰서검사·그랜저검사의, 이 공익의 끝없는 추락이 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검찰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빚어진 검찰권의 오남용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검찰권에 민주적인 통제의 고삐를 채워 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검찰의 사퇴 파동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반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퇴 파동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였고, 국회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국회를 무시한다면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 역시 사라지는 것이며 검찰권은 법의 이름을 빌린 국가폭력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나라 법치주의를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최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합니다.

즉시 사퇴 파동을 거두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길은 이미 착수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등 여러 대형 비리사건의 지장을 막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최소

한의 개혁을 담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유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범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구 의원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정범구 의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세 분 동료 의원께서 한 분은 검찰 출신이시고 한 분은 경찰 출신이시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신데 저는 순수 민간 출신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 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할 것이냐 법무부령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국가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기강이 무너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선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삼백여 분이 안 되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서 그 하늘 같이 무거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으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비록 소속된 정파는 다르고 국가 운영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소중한 입법권을 하늘 같이 받들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 이 나라를 호령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집요한 압력과 로비를 통해서 좌절시키더니 이제는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국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집단 사직 등 조직적 항명을 보이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국민들과 맞장을 뜨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이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할 것인가 법무부령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국민들이 벗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아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은 아마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검찰이 자신 조직의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인가 하는 질문을 저 민간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던져 보게 됩니다.

국민 대다수의 이해와는 관계없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의 발로 아닌가,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고 용공조작·공안조작 사건들에 대해서 한 번도 검찰의 진솔한 사과가 있었습니까? 국가가 수많은 배상금을 지금 물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독재정권에 부화뇌동해서 앞장섰던 검찰의 진솔한 사과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국민을 걱정해서 이 수사권 문제에 이렇게 집요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았으면서 통제받지도 않은 권력 간의 싸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합의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로서로 서 있는 입장은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위임한 이 권력—입법권—을 하늘 같이 받들고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국민의 통제조차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회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정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정의화·이명수·김을동·안규백·이사철·여상규·박준선·원유철·박주선·김학송 의원 발의)

3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황영철·김을동·노철래·김우남·심대평·김장수·정영희·정수성·정하균 의원 발의)

3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장 제출)

3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5시28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2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서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서종표**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서종표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육아 부담의 해소와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복수 국적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정장선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처리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내용을 통합한 법률안으로서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시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이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서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송 의원님?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종혁 의원님 먼저 하세요. 진행하세요. 잠깐만요.

몇 분 더 계시네……

계속 투표하십시오.

자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35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6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금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금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양승조 의원, 천정배 의원, 정갑윤 의원, 정범구 의원, 이재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과 최문순 의원이 소개한 금양98호 선원에 대한 실종자 수색 재개와 의사자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도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의사상자 인정 범위를 소급 적용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김금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8.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이윤성·허범도·김성희·차명진·권영세·이화수·박준선·조원진·강성천·이경제 의원 발의)
- 4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38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7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1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홍영표**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1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태통로 설치 전에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과 서식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자연환경안내원의 명칭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며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자연환경해설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보호지역 외의 지역에도 포획금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렵면허의 결격 사유를 구체화하고, 밀렵행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의화 부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연공원의 범위에 지질공원을 추가하고,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도요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며, 일반 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의 인가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진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액

비살포대상지를 임야 중 시험림 지정지역과 골프장에 한정·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각각 제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률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자활급여 수급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조전임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근로자 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영세 자영업자와 자활급여 수급자의 고용보험의 가입 절차, 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근로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의 확산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의 기능을 대폭 조정·강화하면서 처벌규정을 신설·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사업을 실시할 때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예·결산 승인 및 이사회 구성 요건을 신설하여 공제회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는 등의 지역일자리공시제를 도입·시행하고,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

관련 사항의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과하여 청소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학조사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한도액을 상향하였고, 석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체 심사서 작성의 근거 등 하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2인, 기권 5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자
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수
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수
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독
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고
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9인 중 찬성 212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5시56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52항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존경하는 강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대리 강석호** 존경하는 국회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 분야에도 생명자원의 보존·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국외 반출 승인 대상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국외 반출 통제를 강화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강석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5시59분)

○**부의장 홍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지요.

○**정치개혁특별위원장대리 여상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훈 간사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급한 업무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선거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등록이 끝나기 전에 재외투표가 실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로부터 2일간으로 앞당기고 2개의 선거가 연이어 실시되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이 겹치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하나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전쟁·폭동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선거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확정 후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

신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및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권자의 편의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여상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4.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6시03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54항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위원장대리 백성운**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입니다.

우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은 2010년 수주액이 전년 대비 13% 감소하고 주택건설 물량도 2007년 대비 24조 원이나 감소하는 등 SOC 물량의 감소와 주택 거래의 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절감

을 이유로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를 내년 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업체 간의 과당경쟁과 저가 수주로 인한 건설업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일자리 감소, 특히 지역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공기 단축과 공사비 감액으로 인해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못한 경제성의 저하는 물론 부실시공과 산업재해의 증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저가낙찰제를 철회하거나 연기하고 전반적인 발주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첫째,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것,

둘째, 정부는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 대신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 낙찰제 등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생애주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셋째, 정부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공사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다양한 입찰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예,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2인, 반대 9인, 기권 8인

으로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5.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16시07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55항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 이종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 이종걸입니다.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난 2010년 2월 18일 구성된 이래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노동부를 비롯한 20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위해서 기업현장 시찰과 중소기업 간담회를 실시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육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래사회 주역인 청년을 위한 일자리만들기 방안에 대해서 재계, 노동계 및 학계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노력을 국가정책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일자리문제에 관한 대책을 담고 있는 의원입법 발의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할 때 사업효과를 평가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총 12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의안은 수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사항과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각 정부기관과 경영자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제기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작성

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육성 및 취업지원, 취약 계층 고용지원 등 여덟 가지 분야의 42개 주제와 8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참조로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오늘 또 할 일이 많으신데 좀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주요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일곱째까지 되어서 우리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의 끝에 고용의 유연성, 안정성에 대한 적절한 균형 그리고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연장근로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단축근로시간에 대한 주제는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만 이점이 존재해서 결의안에는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간이자 핵심 요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자리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제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는 종료되지만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6시11분)

○부의장 홍재형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아침에,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한 15분쯤 늦었습니다.

오늘 의사 안건이 1시 반에 배달이 됐습니다. 55개의 안건입니다.

하나씩 검토하더라도 아마 한 40초씩은 했는데

40초 안에 어떻게 이 안건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안건을 좀 미리미리 달라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리면 하루 24시간 정도의 숙성기간을 두자, 이런 것이 국회법에도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지키지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꼭 무슨 깨진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처럼 매번 얘기를 하고 매번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들으시지요?

부의장님!

○부의장 홍재형 듣고 있습니다.

○이용경 의원 아, 듣고 계시지요?

부의장님께서도 의장단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운영위원장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의장단에다 해야 될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러한 식으로 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도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미디어법도 그 난리를 치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뭐가 통과됐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실정이 국민들한테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이렇게 동료 의원들을 갖다가 코미디에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서로 간에 존경심을 저해하는 그러한 국회의 운영 행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단께 꼭 24시간 숙성을 하도록 하고 절대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나 경제적으로 급박한 그러한 사항이 아닐 때는 이 안건을 24시간 전에 꼭 주셔서 가지고 숙성을 시키도록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6시14분)

○**부의장 홍재형**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議員**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의원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 50명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야당과 양대 노총 지도부의 비판이 거세었지만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고 노노 간의 무한경쟁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50명의 국회의원은 산업현장의 평화를 위해 노조법 개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하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해당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본회의의 의결 또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암담합니다. 산업현장의 일대 혼란이 눈앞에 보임에도 국회는 무기력에 빠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우리도 복수노조 허용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별 노조나 직종별 노조 중심인 미국이나 유럽 등은 조직 대상 근로자가 중복되지 않는 다수 노조로서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노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다수 노조 체계라면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충분히 재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일본의 경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20년 넘게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그 결과 지금은 복수노조 기업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

26개 산별노조 중 무려 19개 산별노조는 지난 22일 노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수노조 반대 서명에 기업사용자 5018명을 비롯해 한국노총 조합원 13만 5174명, 일반 국민 19만 5433명이 동참하였습니다.

복수노조에 대해서 사용자 측은 반대하고 노동계는 찬성한다는 공식은 그저 과거의 개념일 뿐 현실에서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노조는 97년 노조법 개정 당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으로 나타날 폐해가 너무 크고 우리나라 노사문화와도 맞지 않아 14년 넘게 시행되지 못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금지 이유를 ‘노동조합 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 적용의 복잡성, 사용자 측에 의한 어용노조 설립의 방지’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 당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너무도 쉽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당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저 자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1997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했던 당시와 오늘날의 노사환경이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할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정부 측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직종별 노조 설립, 기존 노조 분리, 기업별·산별 노조 분화, 사내하도급 분야의 조직화 등 여러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나아가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필수룩 노조별 별도 교섭을 주장하게 되면서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최후의 보루 또한 깨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산업평화의 문제이고 우리 경제의 문제입니다. 고스란히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법이니 어쩔 수 없다’거나 ‘법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는 비판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머지않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사태가 도래할 지도 모릅니다. 이미 때를 놓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산업평화를 위해 국회, 정부, 노동계 모두가 노조법 개정에 다시 한번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전북 익산을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계셨으면 하는 분들은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 FTA는 내용적으로도 불공정한 협상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고는 다르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야 또 제약업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협상을 했다는 목소리가 큼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협정 내에 많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헌법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과연 이 한미 FTA를 조약 체결 절차인 비준동의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미 FTA는 양국에 있어서 법적 효력 및 위상이 다릅니다. 출발부터 불공정합니다. 한미 FTA는 미국에 있어서는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를 실행하려면 이행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상위법인 미 국내법에 저촉이 되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FTA는 조약이어서 이행 법률이 필요 없고 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FTA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무효입니다.

한미 FTA 독소 조항이 우리의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미 FTA에 ISD(투자자 국가 소송권) 또 레칫조항(역진방지조항) 또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등의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독소 조항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가치와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ISD가 해당국의 경제 필요와 공공의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공공정책을 변화시켜서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 제3의 중재기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미 NAFTA에 이 규정이 있어서

NAFTA의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외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자 이를 의식해서인지 한미 FTA에서는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행위는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공공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결과 침해가 발생해도 보상치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차별적 행위’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외국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비차별적이라는 행위 태양이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에서 공동위원회를 두고 해석상 애매할 경우에 공동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중재 위원들이 기속당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양 당사국의 행정공무원으로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훈련도 안 된 공무원들인데 이런 공무원의 판단에 사법작용이 기속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직접 수용과 동일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간접 수용의 요건의 모호성 또 국내에서는 손해배상할 때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데 이 협정은 현금으로만 보상할 수 있어서 외국인을 우대하고 내국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ISD 규정은 위험적인 요소가 곳곳에 남아 있어서 우리 사법체계 및 절차와 충돌합니다.

또 역진방지조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일단 한번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방을 하면 나중에 그것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없게 막아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공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제2항에 위배됩니다.

이렇듯 한미 FTA의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적인 가치와 충돌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입법권만을 위임받았지 헌법 개정 권한까지 위임받지는 않았 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조약 비준 절차에 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법리상 맞 는 것인가,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연구와 그리고 또 결국은 이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오늘로 6월 임시국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처리 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을 제정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비록 우리 자유 선진당은 비교섭단체로서 그 같은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리 라 믿었고 또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간절 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소망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께서는 국회를 오가시면서 북 한인권법 제정을 애타게 촉구하는 시민들의 외침 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단지 국회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직접 인권 탄압을 받았던 탈북자들이 이제는 국내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해외로 나가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고통 을 베를린 슈타지 박물관에서 고발했습니다. 상 상을 초월하는 인권 침해 실태와 유린 현상에 독 일은 경악했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거 서독은 동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 해서 1972년에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인 권조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북 한과 같은 참담한 인권 유린을 겪지 않았고 동독 주민들 스스로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키울 수 있 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 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현실에 경악하기는 영국도 마찬가 지입니다.

바로 어제와 그제 영국 의회에서는 이틀 동안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검 찰과 경찰의 권리 다툼에 휘둘리던 그 시간에, 그리고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불쌍사나 운 모습을 국내외에 보이고 있던 그 시간에 영국 국회는 북한 인권 참상에 경악했습니다.

그 청문회를 주선하신 분은 다름 아닌 북한과 가장 가까운 분 중의 한 분인 데이비드 엘튼 상 원의원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 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이 싫어하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고 끝내는 무력 도발도 해 올 것이라고 우려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과 일본은 이미 6, 7년 전 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두 나라의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북한인권법 보다 훨씬 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미국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인권법에 반대하기는커녕 미국과 대화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같은 패 배주의적인 사고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인 가치이고 권리입니다. 인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땅 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왜 우리 동포인 북한 주 민들은 누리지 못해야 합니까?

북한은 인신매매 최악 국가입니다. 고문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공개처형 당하면서 굶어 죽어

가는 북한 주민들,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선택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당위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직시하고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7월에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남아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청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230만 재외국민 여러분!

민주당에서 재외동포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내년부터 230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경상북도 유권자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외국민 투표권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만 먹기 어려운 떡은 감입니다. 현재 재외국민은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과 투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공관 근처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모르지만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재외국민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생업에 바쁜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투표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외국민 선거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상찬·안상수·김충환·안경률 의원님은 재외 선거인 등록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그리고 유정현·박준선·김영진 의원께서는 재외국민 투표에 우편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진당의 박선영 의원께서는 등록과 투표 모두 인터넷과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박선영·안상수·김충환·안경률·박준선 의원께서는 순회등록이나 추가투표소 설치를 통해 선거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직접 재외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말에 의하면 늦어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재외선거 관련 입법을 완료해야만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재외국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은 쟁점 없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로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우편제도가 부실해서 우편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현재로는 이중국적자의 확인 및 대리투표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순회투표소나 추가투표소 설치 문제는 중국과 캐나다, 독일 등 공관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투표기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선거법이 경상도·전라도에서만 실시될 수 있고 충청도에서 실시될 수 없다면 이는 법의 보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공직선거 광고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방송이나 신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라는 이 또한 해외 현지 신문과 방송은 우리나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선거운동의 내용이라든가 횡수 등을 넘어서 특정 후보자 혹은 특정 당에 유리한 선거광고가 실릴 경우 우리의 법적·행정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해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선관위와 사법 당국의 입장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재외선거인 만큼 선거의 편익성보다는 공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 당국, 그리고 이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입장 때문에 재외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란하게 하고 다닌 것 같아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삭발이라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유사한 법안을 낸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이 있어서 오늘은 일단 구두로 유감 표명을 하는 바입니다.

다.

아직 8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어서 재외국민 투표의 편의성과 관련된 일부 사항들이 개선될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관을 직접 두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은 우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총선과 대선이 1년 이내에 같이 실시되는 경우 총선 때 한번 등록하면 대선 때 등록을 생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아침과 저녁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이런 부분이라도 고쳐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는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 상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30만 명의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투표하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들과 정부 당국,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강기갑 의원입니다.

정부는 결국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 재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열여덟 번이나 광우병이 발병한 국가이며, 작년에는 광우병 발병을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 크게 지탄을 받은 바 있고, 결정적으로 올해 2월까지도 광우병이 발병한 상시 광우병 발생국입니다. 이러한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구제역으로 생계를 잃고 보상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소값은 나날이 폭락하고 사료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뛰는 현실에 한숨짓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는 앞어진 사람 뒤통수 내리치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협상 내용을 보면 30개월 미만 뼈 있

는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수입조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굴욕적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쇠고기를 모두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캐나다산 모두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만 또한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30개월 미만 뼈까지 수입합니까? 이명박 정부가 뼈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런 굴욕적인 캐나다와의 협상 결과는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를 구결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합의해 준 탓입니다.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대폭 개방을 해 준 나라는 없습니다.

2008년 당시에 미국과의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주장했습니다. OIE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WTO에 제소당한 것은 OIE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이 아니라, 오히려 WTO에 제소된 것은 미국의 쇠고기 시장을 통째까지 대폭 내준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캐나다의 WTO 제소로 궁지에 몰린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도 캐나다에 대해서도 주변국만 못한 협상 결과를 가져오는 그야말로 동네 북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가의 미국의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올 경우 우리도 재협상할 것이라고 전 국민에게 약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그러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여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마저 쇠고기를 뼈까지 대폭 양보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졸속으로 내 준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을 전면 재협상하여 국민의 검역주권을 되찾아 와야 됩니다. 생존권에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도 찾아줘야 합니다. 식탁의 안전도 지켜야 합니다.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 재개는 국회의 심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광우병 발생 국가의 수입 재개 여부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국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의 어머니인 농민, 신음하고 있는 축산 농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충남 아산에 소재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노조 측의 천막 농성이 오늘로 44일째가 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기업 근로자의 주장은 단순하였습니다. ‘제발 잠 좀 자자’ ‘잠 좀 자고 일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간 2교대에 대하여 유성기업 노사 간에 2009년 7월경 합의하였고, 2010년 1월 13일 문서화까지 하였습니다. 노조 측은 2011년 1월부터 주간 2교대 합의사항의 촉구를 요구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직장폐쇄와 공권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잠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성기업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용역 경비, 일명 용역 깡패들의 폭력으로 조합원이 쓰러져 피를 흘리는 장면입니다. 또한 공사장에서나 사용되는 해머를 휴대한 용역 경비들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노동 분규의 현장이라는 말입니까?

현 상황에서 노조는 직장폐쇄 철회와 조합원 전원 복귀, 용역 깡패와의 충돌로 인한 부상자 문제 해결, 사측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취하 및 민사상 청구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개별적 복귀와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며 언제든지 작업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조합원들의 의지에 비해 사측은 과연 어떤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의구심은 ‘유성기업 불법 파업 단기 대응 방안’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문건은 유성기업 직장폐쇄 후 아산공장 내 현대·기아자동차 총괄이사의 차량에서 5월 20일 발견된 것으로서 현대·기아차가 유성기업 노사분규 사태의 배후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파괴, 주간 연속 2교대제 교섭 무력화’ 등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조 컨설팅은 노조 집단행동→회사 직장폐쇄 및 용역 경비 배치→대량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의 과정을 거쳐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노무법인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경주 발레오전장과 영남대 의료원 노사분규 사태 등에 개입하여 노조를 무력화하였는데, 유성기업의 현 상황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유성기업 조합원에 대해 그렇게 신속하게 체포 또는 구속을 하였지만 용역 경비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 집행도 없어 보입니다.

경찰의 자성과 차량으로 밀치는 등 여러 폭력을 휘둘러 조합원에게 상해를 가한 용역 깡패들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30일 라디오 연설에서 유성기업 노동자의 파업에 대하여 “연봉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할까요? 7000만 원을 수령하는 일부 조합원도 있습니다만 유성기업 조합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9년입니다. 평균 임금은 4100만 원으로 월 평균 임금은 340만 원입니다. 이 임금도 정규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 잔업시간 월 61시간, 야간근무 2주를 하여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야간근무 및 잔업이 없으면 세액 공제 전 임금은 210만 원 정도이고, 세액 공제 후 임금은 160만 원~17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수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연

봉 7000만 원' 주장은 편향된 주장이며 대통령답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기업 사태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400여 명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44일째 천막농성 중이고, 노조원과 용역들 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과 관리자가 조업 중인 생산라인도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 사건 해결에 앞장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곽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숙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부양자 의무기준을 삭제하고, 시설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해 달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국민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번 6월 국회에서도 이 개선안을 외면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3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인·장애인입니다.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계 교수님들에 이어 얼마 전에는 1만 4000여 명의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자 촉구를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설생활자들의 생계급여는 본인이 아니라 시설운영자에게 대신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설생활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를 한 푼도 손에 쥌 수가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저축을 해서 시설에서 나와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활비가 전혀 필요 없을까요? 한 번 시설에 들어가면 평생 시설에서만 살아야 할까요? 당사자 대신 시설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는 다양한 문제를 양산합니다.

먼저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침해합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는 자기에게 지급되는 돈을 한 푼도 받을 수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혼자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자립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설로 바로 급여가 지급되다 보니 시설에 의존적이 되거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수급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비리의 발생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여가 줄어듭니다. 작년 9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장시설로 규정하고 일반 수급을 일괄적으로 시설 수급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4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아서 시설이용료로 19만 원을 내고 23만 원은 본인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수급자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정부에서 시설로 1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다입니다. 결국 당사자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시설에서도 6만 원을 결국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0조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일 뿐인데 이에 근거해서 모든 급여를 시설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권리보다 행정적 편의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로 가면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 급여가 줄어드니까 이를 통해서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도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행정조치일 것입니다. 수급권자라는 법 용어의

정의에 맞게 수급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만 가난한 이들의 희망은 또 한 번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정기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지금 본회의장 귀빈 방청석에는 파벨 간타르 슬로베니아 하원의장 일행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슬로베니아 하원의장 일행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과 회의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

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1인)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선택	권성동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섭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3인)

유원일	정범구	조승수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1인)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응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낙연 이명수
 이강래 이경재 이병석 이사철
 이미경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상권 이영애 이용섭 이윤석
 이애주 이은재 이정현 이종걸
 이윤성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종구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진삼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이한구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임영호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장세환 전혜숙 정갑윤 정미경
 전현희 전혜숙 정양석 정영희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옥임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정태근 조원진 조전혁 조성영
 조영택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조진래 조호영 진성호 진영
 주승용 주정배 최경환 최희
 차명진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구식 최인기 최재성 최원
 최영희 최한기 최허원 최허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2인)
 유원일 조승수
기권 의원(3인)
 유정복 이인기 정범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5인)

장기정 장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응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명수 이미경 이석현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영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북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전 현 회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최 규 식

(천정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5인, 기권 의원 1인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광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영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원 박 희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응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료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북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전 현 회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미 경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영 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인 기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3인)

김 성 조 이 용 섭 정 범 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김 광 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대 원	황 우 여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영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박 회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룰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유 회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2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대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박 회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수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룰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김재운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이용경	이용섭	이윤석	이윤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정희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미경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손숙미	손학규	송민순	송영선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조배숙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한기호	허원제	허천	홍사덕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황영철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황우여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반대 의원(2인)

노영민 박병석

기권 의원(6인)

김성순 김성조 이미경 조승수
추미애 현기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2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김광림	김재운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민순	송영선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배숙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3인)			
유원일	조경태	조승수	
기권 의원(6인)			
김성순	김성조	김재균	송훈석
이미경	이정현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욱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배숙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3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용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반대 의원(4인)

유원일	이미경	조경태	조승수
-----	-----	-----	-----

기권 의원(1인)

박선영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4인)

김동성	박병석	유선호	천정배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29인)

장기갑	장기정	장길부	장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현 이 정 회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회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조 승 수

기권 의원(4인)

김 진 표 유 원 일 장 병 완 조 해 진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영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회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용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회 목 유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현 이 정 회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진 재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식 최 연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영 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광 정 숙 권 선 택
 권 성 동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선택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최규식	최병국	최인기	최재성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황우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기권 의원(2인)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이인기	조순형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승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일	윤상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성 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회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김 성 조 이 종 걸
 (현기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1인, 기권 의원 2인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7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광 정 숙 권 선 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준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지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용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룰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성 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회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3인)

이 미 경 이 성 남 추 미 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기권 의원(2인)

강봉균 이상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변용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허원제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황영철	황우여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기권 의원(1인)

권영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용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중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김성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23인, 기권 의원 없음)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정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중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중표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기권 의원(6인)

김성조 박선영 성윤환 이강래
 이상득 이석현
 (강기갑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18인, 찬성 의원 212인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광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문희상 박근혜 류근찬 문학진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응전	고승덕	고홍길	곽정숙	권경석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욱이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김학용	김학재	김효석	김희철
이강래	이경제	이낙연	이두아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백원우	변응전	변재일	서병수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신영수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윤진식	이강래	이경제	이낙연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이용섭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이인기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이종혁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이철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이해봉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임영호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장세환	장윤석	장광근	장병완
황우여				전혜숙	정갑윤	전병헌	전재희
기권 의원(1인)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김진표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투표 의원(222인)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찬성 의원(21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정 욱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3인)

성 윤 환 최 재 성 홍 희 덕
 (김무성·송광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22인, 찬성 의원 219인, 기권 의원 3인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욱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응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립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사 철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종 걸
 이 중 구 이 중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진 병 현 진 여 옥 진 재 희 진 혜 숙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욱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정 태 근

기권 의원(3인)

김 태 환 이 성 남 천 정 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신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4인)
 김진표 박기춘 박주선 이사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석현 이성남
 이용경 이용섭 이인기 이병석
 이종걸 이종구 이춘석 이성남
 이철우 이춘석 이혜훈 이석현
 임영호 임해규 임해규 임해석
 장세환 장윤석 장윤석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재희 전재희
 정몽준 정미경 정영희 정영희
 정수성 정진섭 정진섭 정진섭
 조경태 조영택 조영택 조영택
 조승수 조진래 조진래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주성영 주성영
 최경환 최경희 최경희 최경희
 최규식 최규식 최규식 최규식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정희수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진성호	진영	차명진	천정배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이철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이해봉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임영호	임해규	이화수	임동규
				장세환	장윤석	장광근	장병완
				전여옥	전재희	장제원	전병헌
				정몽준	정미경	전혜숙	정갑윤
				정수성	정영희	정범구	정세균
				정장선	정진섭	정옥임	정의화
				정희수	조경태	정태근	정하균
				조승수	조영택	조배숙	조순형
				조정식	조진래	조원진	조전혁
				주광덕	주성영	조진형	조해진
				진성호	진영	주승용	주호영
				최경환	최경희	차명진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구식	최규성
				최인기	최재성	최연희	최영희
				한기호	허원제	최종원	추미애
				홍사덕	홍영표	허천	현기환
				홍희덕	황영철	홍일표	홍정욱
						황우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기권 의원(2인)

김성곤 신지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조 김세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영 이두아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철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전해숙 정갑윤 정몽준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욱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최규성 최병국
 최경희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박근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영 이두아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철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전해숙 정갑윤 정몽준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욱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정갑윤	정동영	정몽준	정범구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승수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우윤근	원혜영	원희목	유선호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천정배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영
최병국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이병석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반대 의원(1인)

권성동

기권 의원(2인)

심재철 최연희

(정진섭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8인, 기권 의원 2인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원희목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병석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몽준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	-----	-----	-----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고흥길, 강권경, 강권선, 고권성, 주성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주성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최규성, 최정배, 최경환, 진성호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권영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태,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김금래
 김성식, 김성조, 김영환, 김옥이, 한기호, 허원제, 허천환, 김성곤
 김소남, 김영진, 김유정, 김을동,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김성식
 김용구, 김우남, 김재균, 김재운,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김소남
 김장수, 김재경, 김진애, 김진표, 김대환, 김형오, 노영민, 김용구
 김정권, 김태원, 김태호, 김형오, 노영민, 박근혜, 박병석, 김재경
 김충조,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노영민, 박근혜, 박병석, 김진애
 김학송,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박근혜, 박병석, 박준선, 김태원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병석, 박준선, 박지원, 김학용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선영, 박준선, 박지원, 김희철
 박보환,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준선, 박성운, 서병수, 서상기, 김태원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성운, 서병수, 손숙미, 송훈석, 신성범, 김희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손숙미, 송훈석, 신성범, 김희철
 백원우, 변용전, 변재일, 서병수, 손숙미, 송훈석, 신성범, 김희철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송영선, 신성범, 안민석, 양승조, 원희목, 유정복, 윤영
 손학규, 송민순, 송영선, 신상진, 심대평, 안민석, 양승조, 원희목, 유정복, 윤영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안민석, 양승조, 원희목, 유정복, 윤영
 신영수, 신지호,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원희목, 유정복, 윤영, 이낙연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원희목, 유정복, 윤영, 이낙연
 안상수, 안홍준, 안원혜, 양승조, 원희목, 유정복, 윤영, 이낙연
 오세연,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영, 이낙연, 이범관, 이정현, 이철우
 유성엽, 윤상일, 윤석용, 윤영, 이낙연, 이범관, 이정현, 이철우, 임해규
 유정현, 이강래, 이미경, 이낙연, 이범관, 이정현, 이철우, 임해규, 장윤석
 윤진식, 이명규, 이성남, 이영섭, 이인기, 이종구, 이찬열, 이한구, 임해규
 이두아, 이명규, 이석현, 이영애, 이인기, 이종구, 이찬열, 이한구, 임해규
 이병석, 이영애, 이종걸, 이진복, 이학재, 임영호, 장세환, 장여옥, 정몽준
 이윤석, 이은재, 이종걸, 이진복, 이학재, 임영호, 장세환, 장여옥, 정몽준
 이정희, 이종걸, 이진복, 이학재, 임영호, 장세환, 장여옥, 정몽준, 정욱임
 이주영, 이진복, 이학재, 임영호, 장세환, 장여옥, 정몽준, 정욱임, 조순형
 이춘석, 이학재, 임영호, 장세환, 장여옥, 정몽준, 정욱임, 조순형, 조전혁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세환, 장여옥, 정몽준, 정욱임, 조순형, 조전혁
 장광근, 장병완, 전병헌, 정갑윤, 정영희, 정진섭, 정태근, 조순형, 조전혁
 장제원, 전병헌, 정갑윤, 정영희, 정진섭, 정태근, 조순형, 조전혁, 조영택
 전혜숙, 정세균, 정장선, 조배숙, 조원진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환, 김성곤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김성식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김소남
반대 의원(1인)
 이용경
기권 의원(1인)
 송광호
 (심재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17인, 찬성 의원 215인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운,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용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안원혜, 양승조
 오세연,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성엽, 윤상일, 윤석용, 윤영, 이낙연
 유정현, 이강래, 이미경, 이낙연
 윤진식, 이명규, 이성남, 이영섭
 이두아, 이명규, 이석현, 이영애
 이윤석, 이은재, 이종걸, 이진복
 이정희, 이종걸, 이진복, 이학재
 이주영, 이진복, 이학재, 임영호
 이춘석, 이학재, 임영호, 장세환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세환
 장광근, 장병완, 전병헌, 정갑윤
 장제원, 전병헌, 정갑윤, 정영희
 전혜숙, 정세균, 정장선, 조배숙
 정범구, 정세균, 정장선, 조배숙
 정의화, 정장선, 조배숙, 조원진
 정하균, 조영택, 조원진

오세우	우윤근	원혜영	원희목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선호	성엽	일호	재중	장수	재경	재균	재윤
정복	정현	상일	상현	정권	진애	진표	춘진
윤석용	영	진식	강래	충조	태원	태호	태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이미경	이범관	이병석	이석현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이은재	이인제	이정현	이정희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주선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속미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순학규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진병헌	진여옥	진재희	진혜숙	신건수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정갑윤	정동영	정몽준	정범구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정세균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우윤근	원혜영	원희목	유선호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이경재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이범관	이병석	이석현	이성남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이인제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황영철	황우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진병헌	진여옥
				진재희	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몽준	정범구	정세균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반대 의원(1인)

권성동

기권 의원(1인)

이인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영환	김욱이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이 인 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7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검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효 석
김 희 철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학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룰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균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애 주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정 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제 원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전 혁	조 정 식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영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0인)

김 동 성	박 민 식	박 선 영	심 대 평
이 범 관	이 영 애	이 용 희	조 순 형
최 경 희	최 병 국		

기권 의원(16인)

강 성 천	김 낙 성	김 태 환	박 상 은
백 성 운	변 응 전	손 숙 미	심 재 철
이 인 제	이 종 구	임 영 호	장 윤 석
정 욱 임	조 배 숙	최 연 희	한 기 호

(백성운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4인, 기권 의원 16인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검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희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효 석	김 희 철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응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룰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김학재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성남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박영선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박준선	박지원	배은희	백성운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손숙미	손학규	송민순	송영선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범구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이미경	이범관	이상권	이성남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이찬열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김희철 의원 착오로 김영환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215인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욱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상권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정식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황진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정태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기권 의원(2인)

김성순 김성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속미	송민순	송영선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신지호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김학재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백성운	백원우	변용진	변재일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이찬열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손범규	손속미	손학규	송광호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범구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욱임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정하균	조정태	조배숙	조순형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이경재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이상권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기권 의원(3인)

성윤환 원희목 조정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용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속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욱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정태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이인기·송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주승용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23인, 반대·기권 의원 없음)

이상민 이성남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정태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김영록 유원일 이인기 조진형
 주승용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영선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지원	배영식	고홍길	권경석	권영길	권영진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응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김동성	김무성	김부결	김성곤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효대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원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성남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변응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한구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전현희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이명규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이상민	이성남	이영애	이용섭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최인기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이춘식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황진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기권 의원(3인)

박준선 안홍준 최재성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김광림 김동성 김성동 김성조 김소남 김용구 김장수 김진애 김태환 김형오 노영민 박근혜 박병석 박선영 박종근 배영식 변응전 성윤환 송광호 신상진 신학용 안규백 안효대 우윤근 유기준 유일호 윤상일 이강래 이명규 이상민 이용희 이재선 이종걸 이진복 이춘식 임동규 장세환 전여옥 정범구 정세균 정옥임 정태근 조배숙 조전혁 조정식 조경태 조문환 조영택 조진래 주성영 진영 최규성 최인기 허원제 홍사덕 홍정욱 황진하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중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김성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6인, 기권 의원 없음)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중 길 이 중 구 이 중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욱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욱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중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중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용 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중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룰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범 관 이 상 권 이 애 주 이 영 애

기권 의원(2인)

신 낙 균 이 성 남

(박병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13인, 찬성 의원 211인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응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이인기 이춘식
 (손학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21인, 기권 의원 2인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응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정복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현	전 여 옥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범 구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료	안 규 백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원 일	유 일 호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윤 영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진 성 호	진 영	천 정 배	최 경 환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범 관
최 경 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민	이 성 남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이 재 선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희 덕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춘 식
기권 의원(3인)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김 진 애	박 선 숙	유 정 현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권 성 동	김 성 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결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립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회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용 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결	김 성 동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응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진현희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원천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이정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8인, 기권 의원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응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재선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찬열 이한구 임영호
 임영석 장윤석 전재희 정세균
 정의화 정하균 조순형 조정식
 주광덕 진성호 최경환 최경희
 최연희 최원천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백원우	변용전	서병수	서상기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임동규	임영호	장광근	장병완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범구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진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유원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진성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이윤석	이은재	이재선	이정선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반대 의원(1인)

강기정

기권 의원(4인)

나성린 류근찬 안효대 전병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이춘석	이혜훈	임해규	장광근	장제원	전병헌	정갑윤	정범구	정옥임	정태근	조배숙	조진혁	주광덕	진영	최규성	최영희	추미애	허태열	홍일표	황영철	
이정현	이진복	이찬열	이한구	이해봉	이영호	장세환	전여옥	정범구	정옥임	정태근	조배숙	조진혁	주광덕	진영	최규성	최영희	추미애	허태열	홍일표	황영철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한구	이해봉	이영호	장세환	전여옥	정범구	정옥임	정태근	조배숙	조진혁	주광덕	진영	최규성	최영희	추미애	허태열	홍일표	황영철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한구	이해봉	이영호	장세환	전여옥	정범구	정옥임	정태근	조배숙	조진혁	주광덕	진영	최규성	최영희	추미애	허태열	홍일표	황영철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한구	이해봉	이영호	장세환	전여옥	정범구	정옥임	정태근	조배숙	조진혁	주광덕	진영	최규성	최영희	추미애	허태열	홍일표	황영철

기권 의원(2인)

심재철 조진형

(현기환·백성운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20인, 찬성 의원 218인, 기권 의원 2인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추미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유정복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재선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이춘석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백원우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범구	순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진혁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진성호	진영	차명진	천정배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정복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반대 의원(5인)

강기갑 권영길 유원일 이정희
홍희덕

기권 의원(2인)

김세연 유정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영록	김영진	김욱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순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춘석
이춘석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소남 이용경 추미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기권 의원(4인)

심재철 이용경 이인기 천정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송낙균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옥이
신학용	신대평	신재철	신경률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우윤근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김창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김학재	김형오	김효석	김희철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이범관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박선숙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이성남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낙균
이춘석	이춘식	이한구	이해봉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신학용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윤석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정영희	정옥임	정장선	정진섭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윤석용	윤영	이강래	이경재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성남
진성호	진영	차명진	천정배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이한구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황진하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영희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박 선 영 송 영 선 정 옥 임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광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재 김 혜 성 김 효 석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변 응 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정 선 이 정 희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하 균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경 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진 하

반대 의원(9인)

강 봉 균 김 성 조 김 학 송 유 원 일
 이 한 구 이 혜 훈 장 병 완 주 호 영
 최 경 환

기권 의원(8인)

김 성 식 김 희 철 심 재 철 안 경 룰
 이 용 경 이 정 현 정 태 근 조 경 태

○출석 의원(27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광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신 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병석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조성영 주승용 영
 진성호 진수희 진경희 최
 최규 최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청가 의원(2인)

남경필 정해걸

○개외 시 재석 의원(221인)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웅진 변재일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기준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병석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석현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용섭
 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조성영 주승용 영
 진성호 진수희 진경희 최
 최규 최규 최병국 최연희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회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문 환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흥 사 덕
 흥 일 표 흥 재 형 흥 정 욱 황 영 철
 황 우 여

○산회 시 재석 의원(25인)

강 기 갑 강 명 순 광 정 숙 권 영 길
 김 성 곤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용 구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박 순 자
 서 종 표 신 건 안 효 대 양 승 조
 유 기 준 유 성 엽 이 용 경 이 한 성
 전 현 희 조 배 숙 추 미 애 흥 재 형
 흥 희 덕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권 오 을
 입 법 차 장 김 성 곤
 의 사 국 장 한 공 식

○출석 국무위원

법 무 부 장 관 이 귀 남
 국 방 부 장 관 김 관 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 규 용
 지식경제부장관 최 중 경
 보건복지부장관 진 수 희
 환 경 부 장 관 유 영 숙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채 필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권 도 엽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 성 결

【보고사항】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개혁특별	노영민	김유정	민주당	2011. 6. 28

○의안 제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6. 29 정미경 · 김소남 · 정옥임 · 변웅전 · 이용경 · 최경희 · 최병국 · 김금래 · 허천 · 정해결 · 이정선 · 윤영 · 원희목 · 조진래 · 김을동 · 신영수 · 주성영 · 윤진식 의원 발의)
 6월 30일 공항 · 발전소 ·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1. 6. 29 안효대 · 신지호 · 유정현 · 최경희 · 김태원 · 박대해 · 임동규 · 서병수 · 이사철 · 이범래 의원 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1. 6. 29 안효대 · 장제원 · 유정현 · 최경희 · 김태원 · 박대해 · 임동규 · 이인기 · 서병수 · 이사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1. 6. 29 안효대 · 김소남 · 한선교 · 김금래 · 윤영 · 유정현 · 최경희 · 김태원 · 박대해 · 임동규 의원 발의)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29 정부 제출)

6월 3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1. 6. 29 주승용 · 박은수 · 강창일 · 김영록 · 조정식 · 백원우 · 우윤근 · 정장선 · 김재균 · 전현희 · 변재일 의원 발의)

6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9 정옥임 · 박대해 · 김호연 · 조문환 · 김태원 · 이춘식 · 정하균 · 이종혁 · 심대평 · 이재선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9 정옥임 · 박대해 · 김호연 · 조문환 · 김태원 · 이춘식 · 정하균 · 이종혁 · 심대평 · 정영희 의원 발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29 정부 제출)

이상 3건 6월 3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9 백재현 · 백원우 · 최규성 · 안민석 · 장세환 · 안규백 · 최재성 · 박우순 · 전병헌 · 문학진 · 김효석 의원 발의)

6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1. 6. 29 변재일 · 주승용 · 박은수 · 백원우 · 장병완 · 양승조 · 김춘진 · 강기정 · 안민석 · 김유정 · 김상희 · 김영진 의원 발의)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6건 2011. 6. 28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 2011. 6. 28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30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2011. 6. 28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제출)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6. 30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1. 6. 30 국방위원장 제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6. 30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6. 30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 2011. 6. 30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08. 7. 14 박영선 · 박기춘 · 김동철 · 오제세 · 송민순 · 주승용 · 김우남 · 최영희 · 김성곤 · 최규식 · 우윤근 · 전병헌 · 강성중 · 문희상 ·

노영민 · 김희철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8. 8. 7 오제세 · 강창일 · 최인기 · 김충조 · 이진삼 · 이한성 · 박상돈 · 송영선 · 김성수 · 이종걸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08. 9. 29 백재현 · 우윤근 · 강성중 · 신학용 · 양승조 · 조경태 · 배영식 · 오제세 · 김종률 · 나성린 · 이성남 · 박영선 · 양정례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0 양정례 · 노철래 · 김효석 · 안효대 · 정하균 · 박대해 · 황우여 · 송영선 · 백재현 · 정영희 · 임동규 · 서청원 · 김성태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1 이광재 · 최철국 · 백원우 · 김재운 · 이시중 · 노영민 · 송민순 · 이미경 · 송영길 · 김영진 · 김종률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 의원 발의)

(2008. 12. 11 강봉균 의원 외 82인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강운태 의원 대표발의)

(2009. 2. 19 강운태 · 김성수 · 김영록 · 노철래 · 양정례 · 노영민 · 양승조 · 임영호 · 유성엽 · 김재균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

(2008. 9. 11 이성남 · 김상희 · 김영진 · 김우남 · 김재운 · 김종률 · 문국현 · 문학진 · 박선숙 · 박영선 · 박주선 · 백재현 · 송민순 · 송영길 · 신학용 · 안규백 · 안민석 · 양승조 · 우제창 · 이광재 · 이미경 · 이용섭 · 이정현 · 이종걸 · 이춘석 · 장세환 · 전현희 · 전해숙 · 조경태 · 최문순 · 최영희 · 최재성 · 홍재형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09. 2. 11 김성식 · 김광림 · 이종구 · 강길부 · 나성린 · 차명진 · 진수희 · 김재경 · 주광덕 · 이혜훈 · 손범규 · 김성태 · 신성범 · 이인기 · 정양석 의원 발의)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09. 3. 6 박준선 · 정갑윤 · 김세연 · 송민순 · 박민식 · 이화수 · 손범규 · 강성천 · 손숙미 · 허범도 · 김성희 의원 발의)

(이상 1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기획재정부위원장 보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11. 5. 24 정의화 · 이명수 · 김을동 · 안규백 · 이사철 · 여상규 · 박준선 · 원유철 · 박주선 · 김학송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1. 4. 27 송영선 · 황영철 · 김을동 · 노철래 · 김우남 · 심대평 · 김장수 · 정영희 · 정수성 · 정하균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 의원 대표발의)

(2010. 2. 26 서종표 · 김충조 · 박지원 · 변재일 · 박기춘 · 김영록 · 이낙연 · 박선숙 · 이성남 · 안규백 · 김성곤 · 김진애 · 김무성 · 김장수 · 이진삼 · 정동영 의원 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11. 5. 17 정부 제출)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국방위원장 보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강석호 · 안효대 · 이사철 · 강기갑 · 신성범 · 이한성 · 나성린 · 여상규 · 이용희 · 현경병 · 김성수 · 홍사덕 · 송광호 · 이낙연 · 박보환 · 원희목 · 김정훈 · 정미경 · 정해걸 · 유기준 · 이화수 · 김학용 · 김선동 · 현기환 · 조전혁 · 박순자 · 이주영 · 이정선 · 서상기 · 이명규 · 조진래 · 김옥이 · 이계진 · 김영록 · 유성엽 · 김우남 · 이은재 · 조배숙 의원 발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김종률 · 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농림수산물위원회 보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1. 5. 2 김재경·김성곤·황우여·정태근·최구식·여상규·김용태·김정권·조정식·박민식·김선동·이종구·이화수 의원 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규·이정선·김정·배은희·김호연·이진복·유재중·이화수·김태원·김태환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 6 이명규·강석호·김성수·배영식·이한성·박종근·한선교·박순자·임동규·유승민·이해봉·이성현·조승수·김성희·이진복·안홍준·조원진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10. 3. 18 이종혁·정병국·이명수·안경률·이성현·김성태·김옥이·이두아·이인기·정의화·박순자 의원 발의)

전기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0. 6. 15 권성동·이명규·이종혁·박준선·최연희·김을동·이학재·박순자·배은희·이군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2009. 6. 16 박근혜·김선동·김태환·박영아·배은희·서상기·원희룡·이명규·이종혁·이학재·임동규·최연희·허범도·홍장표·황우여 의원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2011. 2. 11 박근혜·강길부·강용석·김선동·김성동·김성조·김재경·김정·김정훈·김태환·박민식·박보환·박영아·박진·서상기·이상권·이종혁·전재희·정수성·정영희·진영·최병국·최연희·허원제 의원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1. 1. 27 박민식·강용석·권영진·김성태·김세연·김형오·서병수·원희룡·유기준·이진복 의원 발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

(2009. 12. 8 이성현·김우남·권영세·이해봉·김정권·이한성·정영희·이종혁·이인기·임두성 의원 발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0. 6. 7 노영민·주승용·최철국·김재균·김영환·우윤근·이춘석·박주선·김창수·김부겸 의원 발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6. 29 이명수·정희수·김을동·김용구·김창수·임영호·정의화·이재선·이상민·권선택 의원 발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3 정부 제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9. 6. 18 임두성·유성엽·김무성·한선교·윤영·이해봉·이성현·정해걸·손숙미·김소남 의원 발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09. 4. 30 김정훈·허범도·이윤성·안상수·강용석·신성범·이명규·유재중·주성영·이성현·최구식·임동규 의원 발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09. 9. 10 김성수·임두성·김우남·이명규·이종혁·정하균·유성엽·정해걸·한선교·이화수·이성현·배영식 의원 발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6. 29 이명수·정희수·김소남·김을동·김용구·김창수·임영호·정의화·이재선·이상민 의원 발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0. 29 정부 제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2011. 1. 12 송훈석·안홍준·홍희덕·이명수·

이사철 · 이성현 · 정해걸 · 강기갑 · 김효석 · 김영진 · 장제원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강창일 · 최규성 · 이종걸 · 추미애 · 조영택 · 이낙연 · 박기춘 · 장세환 · 박선숙 · 김영진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1. 5. 18 정부 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2009. 1. 21 홍재형 · 송민순 · 강창일 · 문희상 · 양승조 · 김영진 · 이시종 · 김유정 · 오제세 · 우제창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8. 12. 23 정병국 · 유성엽 · 남경필 · 고승덕 · 이한성 · 김성수 · 원희룡 · 김정권 · 권영진 · 주광덕 · 신영수 · 정장선 · 홍재형 · 주승용 · 백재현 · 안홍준 · 이인기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9. 2. 12 김기현 · 홍장표 · 이달곤 · 배은희 · 허범도 · 임동규 · 이학재 · 이명규 · 나성린 · 정갑윤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8. 5 노영민 · 이시종 · 최철국 · 김재균 · 김창수 · 우윤근 · 김진표 · 주승용 · 이춘석 · 변웅전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2009. 5. 19 우제창 · 김상희 · 김성곤 · 김성순 · 김정권 · 문학진 · 박선숙 · 변재일 · 송광호 · 송민순 · 안규백 · 양승조 · 유성엽 · 이성현 · 이주영 · 최인기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임동규 · 안효대 · 원희목 · 이명규 · 이철우 · 김성희 · 박순자 · 허천 · 김태환 · 이종혁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1 권성동 · 김기현 · 허천 · 이화수 ·

홍일표 · 김태원 · 손숙미 · 이군현 · 황영철 · 정해걸 · 임동규 · 배영식 · 정의화 · 이한성 · 고승덕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배영식 의원 대표발의)

(2010. 9. 27 배영식 · 유정현 · 정희수 · 김성곤 · 이한성 · 고승덕 · 김효재 · 정해걸 · 김혜성 · 이명수 · 김정 · 김태원 · 권영진 · 이인기 · 이종혁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0. 8. 5 김기현 · 권영진 · 나성린 · 김효재 · 이한성 · 권영세 · 이종혁 · 홍일표 · 유성엽 · 안홍준 · 송영선 · 김영진 · 신상진 · 우제창 · 황우여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0. 8. 5 김기현 · 권영진 · 나성린 · 김효재 · 이한성 · 권영세 · 이종혁 · 홍일표 · 유성엽 · 안홍준 · 송영선 · 김영진 · 신상진 · 우제창 · 황우여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권 의원 대표발의)

(2010. 12. 30 이상권 · 권영세 · 안홍준 · 유원일 · 이성현 · 이인기 · 이한성 · 이해봉 · 조배숙 · 홍영표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11. 1. 14 김태환 · 정희수 · 정해걸 · 이철우 · 주성영 · 이명규 · 정수성 · 정태근 · 배은희 · 김성조 · 권성동 · 이화수 · 이사철 · 조진래 · 정갑윤 의원 발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

(2011. 1. 28 김용구 · 이명수 · 류근찬 · 이영애 · 임영호 · 김창수 · 우제창 · 김낙성 · 이재선 · 권선택 · 신낙균 · 유성엽 · 김성곤 · 김진표 · 전현희 · 주승용 · 노영민 · 박주선 · 박선영 · 정영희 · 이진삼 · 유정현 · 김재균 · 이한성 · 강창일 · 안규백 · 정장선 · 김동철 · 오제세 · 강길부 · 김혜성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7 정태근·최연희·정영희·이화수·김재균·김영환·김태환·김재경·김세연·이종혁·주광덕·현기환·김성식 의원 발의)
(이상 3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5건 지식경제위원장 보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양승조·김춘진·최철국·박은수·우윤근·박주선·김동철·최영희·강기정·최재성·백원우·변재일·전현희·김우남·김재균·곽정숙·조배숙 의원 발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범구 의원 대표발의)

(2010. 6. 30 정범구·홍영표·정해걸·이찬열·노철래·김우남·송민순·김세연·유선호·강창일·김재윤 의원 발의)

금양98호 선원에 대한 실종자 수색 재개와 의사자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10. 6. 15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162-24 이원상 외 7인으로부터 최문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0. 6. 18 천정배·문학진·최문순·김재윤·이종걸·조영택·안민석·장세환·이석현·유선호·신건·박은수·주승용·이춘석·최철국·전병현·강창일·안규백·김영진·김부겸·조승수·신학용·박주선·이정희·유원일·조배숙·정동영·박영선·김진애·양승조·서갑원 의원 발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정갑윤·정희수·김세연·이춘식·유정현·정해걸·권영진·박준선·황영철·김태원·여상규·이사철·이은재·임동규·김소남·최구식·신성범·송훈석·배은희·원유철 의원 발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0. 7. 7 정부 제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2010. 10. 1 이재선·임영호·이성현·이명수·김용구·이진삼·심대평·변웅전·권선택·

류근찬 의원 발의)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정진섭·이운성·허범도·김성희·차명진·권영세·이화수·박준선·조원진·강성천·이경제 의원 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14 정부 제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29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3. 10 이화수·노철래·정갑윤·박민식·송훈석·박대해·김우남·이명규·정진섭·박순자·신상진·이춘식·김영우·강성천·박준선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 발의)

(2009. 3. 24 정해걸·김우남·김성수·김태원·임동규·정희수·임해규·손범규·이한성·안상수·임영호·박민식·정영희·김성순·이정선·유성엽·이화수·이춘식·임두성·이해봉·김재윤·정갑윤·김영진·이인기·이철우·유재중·강석호·최구식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5. 4 조원진·김재윤·이두아·이명규·이사철·이성현·이진복·이해봉·정병국·정해걸·정희수·황우여 의원 발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8. 9. 30 임두성·이해봉·윤석용·정해걸·안상수·양정례·이성현·유정현·손숙미·김무성 의원 발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9. 6. 18 김춘진·조경태·이윤석·이성남·김성곤·김재균·강기갑·유원일·이용희·김낙성 의원 발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09. 6. 29 황영철·김정권·김성수·김우남·박준선·정갑윤·이한성·이계진·신성범·강기갑·권영진·안효대·이인기 의원 발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2009. 9. 10 곽정숙·강기갑·권영길·박은수·양승조·유성엽·유원일·이한성·이정희·홍희덕 의원 발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3. 22 정영희·조전혁·장광근·노철래·송영선·허천·임영호·구상찬·김창수·윤상일·김혜성 의원 발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0 정부 제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1. 2. 24 김재윤·강창일·김우남·김용구·이미경·안민석·신영수·홍희덕·김진애·김상희·홍영표·원혜영·이용섭·최규성·정병국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09. 8. 26 손범규·박준선·이명수·이성현·김정권·김성희·임동규·김태원·이한성·유승민·유기준·김종률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09. 9. 1 김소남·김정권·이시중·현경병·박순자·이해봉·홍일표·정옥임·이인기·이주영·유기준·정해결·신상진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4. 1 정부 제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09. 6. 16 이주영·이한성·유성엽·이낙연·송영선·여상규·이상민·이경재·신영수·진영·김금래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29 정부 제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8 정부 제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9. 6. 16 이주영·이한성·유성엽·송영선·여상규·이상민·이낙연·이경재·신영수·진영·김금래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29 정부 제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30 정부 제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5. 17 정부 제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 11. 28 정부 제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오제세·강기정·조영택·김성곤·문학진·양승조·김재윤·박선숙·이명수·임영호·이인기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11. 5. 23 강성천·박준선·임동규·김금래·김성태·윤석용·이윤성·장광근·김선동·이정선·정양석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09. 5. 28 이화수·박민석·이사철·김우남·강성천·정해결·이춘식·정갑윤·김영우·

원유철·김상희·김재윤·김성태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15 정부 제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0. 2. 3 이찬열·송민순·이윤석·김재윤·김효석·양승조·김상희·홍희덕·최재성·김동철·최영희·이용섭·추미애·우제창 의원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24 서병수·이인기·유승민·성윤환·박종근·이찬열·유기준·임영호·박대해·정갑윤·구상찬·이한성·조승수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2010. 9. 3 신영수·강석호·이종혁·전여옥·윤상현·임동규·이명수·백성운·장광근·나성린·홍영표·고승덕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이석현·강기정·양승조·최재성·조경태·김재윤·김동철·최규식·김효석·안민석·이종걸·전혜숙·송민순·신건·박선숙 문학진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0. 12. 31 이종걸·장병완·이석현·최종원·권영길·정동영·박영선·조영택·안민석·서갑원·최문순·정장선·강창일·전병헌·김성곤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1. 1. 21 김성수·김세연·김정권·유성엽·김우남·유정현·이해봉·이종혁·정해걸·임동규·강기갑 의원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10. 9. 24 이종혁·서상기·배영식·임동규·

이한성·권영진·이해봉·고승덕·유성엽·백재현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2010. 9. 9 신영수·김세연·송영선·안효대·강석호·조해진·이정선·손범규·박은수·강길부·심재철·이한성·고승덕·장윤석·장광근·전혜숙·임동규·이명수·정미경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09. 10. 1 최구식·이경재·정갑윤·조진래·권영진·이진복·김세연·권경석·나경원·성윤환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8. 17 이명수·권경석·김부겸·홍희덕·임영호·유성엽·이해봉·김을동·김용구·박선영·최규식·김효재·조승수·김창수·이은재·김재윤·권선택·류근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4. 12 정부 제출)

(이상 4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3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30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0. 9. 28 장윤석·권경석·고승덕·이상권·이한성·원혜영·이명수·김소남·정갑윤·구상찬·김광림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10. 10. 5 정진섭·김성수·박상은·이춘식·나성린·유일호·김광림·김성식·정양석·이사철·허태열·유승민·원유철·조해진·유정현·권영진·강성천·차명진·김영선·주호영 의원 발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0. 2. 8 김재균 · 강기정 · 김영진 · 최철국 · 강운태 · 조영택 · 김영록 · 양승조 · 김재윤 · 박은수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10. 6. 14 윤영 · 장광근 · 윤석용 · 정희수 · 안효대 · 김낙성 · 권경석 · 김동철 · 노철래 · 장제원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3 안홍준 · 임동규 · 배영식 · 임해규 · 백성운 · 김성태 · 홍영표 · 이성현 · 원희목 · 유재중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 · 정진석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2009. 8. 25 윤영 · 강길부 · 장광근 · 안효대 · 김무성 · 권영진 · 최연희 · 허천 · 정갑윤 · 이계진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0. 16 정부 제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30 정부 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09. 8. 5 장광근 · 김정권 · 이한성 · 최연희 · 박민식 · 백성운 · 이인기 · 정수성 · 고승덕 · 권영세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정부 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9. 9. 3 이주영 · 이낙연 · 신학용 · 이한성 · 김세연 · 김소남 · 주성영 · 박대해 · 유성엽 · 신성범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2. 22 이명수 · 김용구 · 정의화 · 박상돈 · 김창수 · 임영호 · 손범규 · 김우남 · 고승덕 · 송영길 · 김을동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6. 30 정부 제출)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09. 11. 16 정부 제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0. 7. 21 안규백 · 김금래 · 김옥이 · 김학송 · 박주선 · 신낙균 · 양승조 · 유승민 · 이종걸 · 이진삼 · 이춘석 · 임영호 · 원혜영 · 장세환 · 조영택 · 최규식 · 홍영표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09. 9. 30 정부 제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10. 8. 23 장광근 · 박민식 · 최병국 · 윤영 · 김효재 · 조원진 · 신영수 · 최연희 · 권영세 · 최구식 의원 발의)

(이상 1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1건 국토해양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고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1. 6. 29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 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안진걸로부터 김상희 · 권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1. 6. 29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 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안진걸로부터 김상희 · 권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보고서 제출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직할출연연구기관 및 소관기관 평가보고서

(2011. 6. 28 정부 제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2011. 6. 30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 제출)